부천 소사 현진에버빌 입주자모집공고(안)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안내 사항

- 부천 소사 현진에버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사전예약 및 홈페이지 분양안내 (http://www.bucheonsosa-evervill.com)로 병행하여 운영 합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 발표 후 서류접수는 방문 접수 합니다.
- 당첨자 공급계약으로 인해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은 당첨자 본인 1인만 입장 가능합니다.(동반자 동행불가/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체온 37.3도가 넘을 경우
 * 기타 견본주택 운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 부천 소사 현진에버빌 분양 상담전화 (☏032-349-3400)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0.04.1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0.09.25. 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천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1순위 청약 접수 시 주택소유에 따라 청약가점제 제한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됩니다.(주택소유여부에 따라 분류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천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가점제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이상 소유하신 분은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1주택 이하(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만 1순위 청약가능)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 제3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 제6호)	**10년간(신설, '20.04.17 이후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 제7호)	**7년간(신설, '20.04.17 이후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 토지임대주택(제1항제5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제3조제2항제7호가목)	5년간		
-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제1항 제2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제1항 제4호), 기타당첨자(제3조제2항 제1·2·4·6·8호)	과밀억제권역	85㎡이하	**5년**
		85㎡초과	**3년**
	그 외	85㎡이하	**3년**
		85㎡초과	**1년**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청약접수시 '무주택기간, 부양 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를 추첨제,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가점제로, 나머지 70%를 추첨제로 적용하여 공급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7년 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기과열지구/분양가상한제주택 재당첨 제한기간 10년, 청약과열지역 7년으로 확대, 공급 질서교란자 청약제한기간 10년 일괄 적용)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9.25.)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천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 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 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인 부천시 1년 이상(2019.09.25.)이전부터 계속 거주, 외국거주기간 제외) 거주한 신청자가 부천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부천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니라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부천시는 청약과열지역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해외체류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는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 건설지역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3개월 미만의 단순 단기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1순위 접수 시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 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 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변경)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기존)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변경)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1.2.모집공고 승인분 부터 적용)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 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선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종류별로 입주자를 선정

② ①번에서 입주자 선정 후 남은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③ ②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세대수의 300% 이내 예비입주자를 선정

④ 특별공급 세대수의 3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②번 선정 후에도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로 전환

● 2017. 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 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bucheonsosa-evervill.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 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 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 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 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 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해당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단,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제한)이 적용되오며,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포함):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전 지역 해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는 1순위 청약 불가(2순위로 청약가능)합니다.

-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및 1, 2순위 포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47조 의 3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청약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민영 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공급하는 주택과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향후「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 재건축 주택에 대하여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지역(직장포함)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1순위 자격제한이 적용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입주권을 획득한 자는 제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규칙 제3조 제2항 각호(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 가목(투기과열지구 한정), 제8호)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되는 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재당첨 제한 기간(과거 당첨된 지역 기준): 과밀억제권역 85㎡이하-당첨일로부터 5년, 85㎡ 초과-당첨일로부터 3년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85㎡이하-당첨일로부터 3년, 85㎡초과-당첨일로부터 1년

※ 청약과열지역: 서울시, 경기도 전지역 (일부지역 제외 :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 처인(포곡읍, 모현. 백암. 양지면, 원삼면 가재월. 사암. 미평. 좌항. 두창. 맹리), 광주(초월. 곤지암읍, 도척. 퇴촌. 남종. 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 용설. 장계. 매산. 장릉. 장원. 두현리, 삼죽면 용월. 덕산. 율곡. 내장. 배태리), 인천광역시 전지역(강화. 옹진 제외),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광역시, 청주(동 지역, 오창. 오성읍만 지정)

※ 투기과열지구: 서울시,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광명시,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화성시(동탄2),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세종시 행복중심복합도시,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는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주택유형 등에 관계없이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위법여부를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시 사업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권이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에도 공급계약 취소 등에 관한 주택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

- 경기도 부천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조정대상지역 내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전매 및 재당첨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주택법」 및 관계 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대출제한 및 전매금지, 가점제 재당첨제한, 예비입주자 선정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 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부천시에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기타)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감정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당해지역(부천시)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 정	2020. 10. 07. (수)	2020. 10. 08. (목)	2020. 10. 12. (월)	2020. 10. 13. (화)	2020. 10. 19. (월)	2020. 10. 30. (금) ~ 2020. 11. 03. (화)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www.appplyhome.co.kr) 로그인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계약 (10:00~16:00)
1장 소	▪ 사업주체 견본 주택 방문접수 시 10:00~14:00 ▪ 한국감정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 "청약홈" 앱			▪ 견본주택 및 사업주체 홈페이지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 "청약홈" 검색	당사 견본주택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 · 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1.1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부천시 공동주택과-48035(2020.09.2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212-4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 지상6층~19층, 4개동 / 총 17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68세대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16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5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33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4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2년 12월 예정(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지정일자는 추후 통보 예정)

▣ 공급 대상

(단위 :㎡,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부양	계		
민영주택	2020000966	01	059.9900A	59A	59.9900	20.8677	80.8577	41.2784	122.1361	42.6472	32	3	3	6	1	13	19	8
		02	059.6915B	59B	59.6915	20.8179	80.5094	41.0730	121.5824	42.4350	16	2	2	3	0	7	9	4
		03	065.7440	65	65.7440	22.3167	88.0607	45.2377	133.2984	46.7378	76	7	7	15	2	31	45	0
		04	074.9805A	74A	74.9805	25.1823	100.1628	51.5933	151.7561	53.3041	6	1	0	2	0	3	3	2
		05	074.9745B	74B	74.9745	25.0457	100.0202	51.5891	151.6093	53.2998	3	0	0	1	0	1	2	1
		06	081.6105A	81A	81.6105	26.8466	108.4571	56.1553	164.6124	58.0174	22	2	2	4	1	9	13	0
		07	081.6045B	81B	81.6045	26.7100	108.3145	56.1511	164.4656	58.0131	8	1	1	2	0	4	4	0
		08	102.9864A	102A	102.9864	36.4966	139.4830	70.8640	210.3470	73.2136	3	0	0	0	0	0	3	0
		09	102.1540B	102B	102.1540	36.3457	138.4997	70.2911	208.7908	72.6219	4	0	0	0	0	0	4	0
	합 계										170	16	15	33	4	68	102	15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표현되어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분양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을 혼돈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기계/전기실, 부대복리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bucheonsosa-evervill.com) 사이버모델하우스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공급 합니다.
 단,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 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주택형	타입	공급 세대수	동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입주지정일)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차(5%)	2차(5%)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계약시	2020.11.30.	2021.03.02.	2021.05.31.	2021.08.30	2021.11.30.	2022.02.28.	2022.05.30.	
59.9900A	59A	32	101동 2호, 3호	2층	2	157,368,305	192,131,695		349,500,000	17,475,000	17,475,000	34,950,000	34,950,000	34,950,000	34,950,000	34,950,000	34,950,000	104,850,000
				3층	2	157,368,305	195,631,695		353,000,000	17,650,000	17,650,000	35,300,000	35,300,000	35,300,000	35,300,000	35,300,000	35,300,000	105,900,000
				17층	2	157,368,305	216,831,695		374,200,000	18,710,000	18,710,000	37,420,000	37,420,000	37,420,000	37,420,000	37,420,000	37,420,000	112,260,000
			101동 5호	1층	1	157,368,305	190,331,695		347,700,000	17,385,000	17,385,000	34,770,000	34,770,000	34,770,000	34,770,000	34,770,000	34,770,000	104,310,000
				2층	1	157,368,305	193,931,695		351,300,000	17,565,000	17,565,000	35,130,000	35,130,000	35,130,000	35,130,000	35,130,000	35,130,000	105,390,000
				3층	1	157,368,305	197,431,695		354,800,000	17,740,000	17,740,000	35,480,000	35,480,000	35,480,000	35,480,000	35,480,000	35,480,000	106,440,000
			102동 1호, 2호	1층	2	157,368,305	193,831,695		351,200,000	17,560,000	17,560,000	35,120,000	35,120,000	35,120,000	35,120,000	35,120,000	35,120,000	105,360,000
				2층	2	157,368,305	197,431,695		354,800,000	17,740,000	17,740,000	35,480,000	35,480,000	35,480,000	35,480,000	35,480,000	35,480,000	106,440,000
				15층,17층	2	157,368,305	222,531,695		379,900,000	18,995,000	18,995,000	37,990,000	37,990,000	37,990,000	37,990,000	37,990,000	37,990,000	113,970,000
			102동 3호	1층	1	157,368,305	188,631,695		346,000,000	17,300,000	17,300,000	34,600,000	34,600,000	34,600,000	34,600,000	34,600,000	34,600,000	103,800,000
				2층	1	157,368,305	192,131,695		349,500,000	17,475,000	17,475,000	34,950,000	34,950,000	34,950,000	34,950,000	34,950,000	34,950,000	104,850,000
				11층	1	157,368,305	216,831,695		374,200,000	18,710,000	18,710,000	37,420,000	37,420,000	37,420,000	37,420,000	37,420,000	37,420,000	112,260,000
			104동 1호, 2호	1층	2	157,368,305	192,031,695		349,400,000	17,470,000	17,470,000	34,940,000	34,940,000	34,940,000	34,940,000	34,940,000	34,940,000	104,820,000
				2층	2	157,368,305	195,631,695		353,000,000	17,650,000	17,650,000	35,300,000	35,300,000	35,300,000	35,300,000	35,300,000	35,300,000	105,900,000

				3층	2	157,368,305	199,231,695		356,600,000	17,830,000	17,830,000	35,660,000	35,660,000	35,660,000	35,660,000	35,660,000	35,660,000	106,980,000
				4층~5층	4	157,368,305	206,331,695		363,700,000	18,185,000	18,185,000	36,370,000	36,370,000	36,370,000	36,370,000	36,370,000	36,370,000	109,110,000
				6층~7층	4	157,368,305	213,431,695		370,800,000	18,540,000	18,540,000	37,080,000	37,080,000	37,080,000	37,080,000	37,080,000	37,080,000	111,240,000
59.6915B	59B	16	103동 1호, 2호, 3호, 4호	1층	2	156,585,267	189,214,733		345,800,000	17,290,000	17,290,000	34,580,000	34,580,000	34,580,000	34,580,000	34,580,000	34,580,000	103,740,000
				2층	4	156,585,267	192,814,733		349,400,000	17,470,000	17,470,000	34,940,000	34,940,000	34,940,000	34,940,000	34,940,000	34,940,000	104,820,000
				3층	4	156,585,267	196,314,733		352,900,000	17,645,000	17,645,000	35,290,000	35,290,000	35,290,000	35,290,000	35,290,000	35,290,000	105,870,000
				4층~5층	6	156,585,267	203,314,733		359,900,000	17,995,000	17,995,000	35,990,000	35,990,000	35,990,000	35,990,000	35,990,000	35,990,000	107,970,000
65.7440	65	76	101동 2호, 3호	4층~5층	4	172,462,411	216,537,589		389,000,000	19,450,000	19,45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116,700,000
				6층~9층	8	172,462,411	224,237,589		396,700,000	19,835,000	19,835,000	39,670,000	39,670,000	39,670,000	39,670,000	39,670,000	39,670,000	119,010,000
				10층~16층	14	172,462,411	231,837,589		404,300,000	20,215,000	20,215,000	40,430,000	40,430,000	40,430,000	40,430,000	40,430,000	40,430,000	121,290,000
			101동 5호	4층~5층	2	172,462,411	218,537,589		391,000,000	19,550,000	19,55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117,300,000
				6층~9층	4	172,462,411	226,237,589		398,700,000	19,935,000	19,935,000	39,870,000	39,870,000	39,870,000	39,870,000	39,870,000	39,870,000	119,610,000
				10층~19층	10	172,462,411	233,837,589		406,300,000	20,315,000	20,315,000	40,630,000	40,630,000	40,630,000	40,630,000	40,630,000	40,630,000	121,890,000
			102동 1호, 2호	3층	2	172,462,411	214,737,589		387,200,000	19,360,000	19,360,000	38,720,000	38,720,000	38,720,000	38,720,000	38,720,000	38,720,000	116,160,000
				4층~5층	4	172,462,411	222,437,589		394,900,000	19,745,000	19,745,000	39,490,000	39,490,000	39,490,000	39,490,000	39,490,000	39,490,000	118,470,000
				6층~9층	8	172,462,411	230,137,589		402,600,000	20,130,000	20,130,000	40,260,000	40,260,000	40,260,000	40,260,000	40,260,000	40,260,000	120,780,000
				10층~16층	12	172,462,411	237,937,589		410,400,000	20,520,000	20,520,000	41,040,000	41,040,000	41,040,000	41,040,000	41,040,000	41,040,000	123,120,000
			102동 3호	3층	1	172,462,411	208,937,589		381,400,000	19,070,000	19,070,000	38,140,000	38,140,000	38,140,000	38,140,000	38,140,000	38,140,000	114,420,000
				4층~5층	2	172,462,411	216,537,589		389,000,000	19,450,000	19,45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116,700,000
				6층~9층	4	172,462,411	224,237,589		396,700,000	19,835,000	19,835,000	39,670,000	39,670,000	39,670,000	39,670,000	39,670,000	39,670,000	119,010,000
				10층	1	172,462,411	231,837,589		404,300,000	20,215,000	20,215,000	40,430,000	40,430,000	40,430,000	40,430,000	40,430,000	40,430,000	121,290,000
74.9805A	74A	6	101동 4호	1층	1	196,692,019	227,407,981		424,100,000	21,205,000	21,205,000	42,410,000	42,410,000	42,410,000	42,410,000	42,410,000	42,410,000	127,230,000
				2층	1	196,692,019	231,707,981		428,400,000	21,420,000	21,420,000	42,840,000	42,840,000	42,840,000	42,840,000	42,840,000	42,840,000	128,520,000
				3층	1	196,692,019	236,007,981		432,700,000	21,635,000	21,635,000	43,270,000	43,270,000	43,270,000	43,270,000	43,270,000	43,270,000	129,810,000
			102동 4호	1층	1	196,692,019	225,307,981		422,000,000	21,100,000	21,1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126,600,000
				2층	1	196,692,019	229,607,981		426,300,000	21,315,000	21,315,000	42,630,000	42,630,000	42,630,000	42,630,000	42,630,000	42,630,000	127,890,000
				11층	1	196,692,019	259,707,981		456,400,000	22,820,000	22,820,000	45,640,000	45,640,000	45,640,000	45,640,000	45,640,000	45,640,000	136,920,000
74.9745B	74B	3	101동 1호	2층	1	196,676,279	224,223,721		420,900,000	21,045,000	21,045,000	42,090,000	42,090,000	42,090,000	42,090,000	42,090,000	42,090,000	126,270,000
				3층	1	196,676,279	228,423,721		425,100,000	21,255,000	21,255,000	42,510,000	42,510,000	42,510,000	42,510,000	42,510,000	42,510,000	127,530,000
				12층	1	196,676,279	253,923,721		450,600,000	22,530,000	22,530,000	45,060,000	45,060,000	45,060,000	45,060,000	45,060,000	45,060,000	135,180,000
81.6105A	81A	22	101동 4호	4층~5층	2	214,084,115	269,315,885		483,400,000	24,170,000	24,170,000	48,340,000	48,340,000	48,340,000	48,340,000	48,340,000	48,340,000	145,020,000
				6층~9층	4	214,084,115	278,715,885		492,800,000	24,640,000	24,640,000	49,280,000	49,280,000	49,280,000	49,280,000	49,280,000	49,280,000	147,840,000
				10층~17층	8	214,084,115	288,215,885		502,300,000	25,115,000	25,115,000	50,230,000	50,230,000	50,230,000	50,230,000	50,230,000	50,230,000	150,690,000
			102동 4호	3층	1	214,084,115	257,515,885		471,600,000	23,580,000	23,580,000	47,160,000	47,160,000	47,160,000	47,160,000	47,160,000	47,160,000	141,480,000
				4층~5층	2	214,084,115	266,915,885		481,000,000	24,050,000	24,05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144,300,000
				6층~9층	4	214,084,115	276,315,885		490,400,000	24,520,000	24,520,000	49,040,000	49,040,000	49,040,000	49,040,000	49,040,000	49,040,000	147,120,000
				10층	1	214,084,115	285,815,885		499,900,000	24,995,000	24,995,000	49,990,000	49,990,000	49,990,000	49,990,000	49,990,000	49,990,000	149,970,000
81.6045B	81B	8	101동 1호	4층~5층	2	214,068,376	265,831,624		479,900,000	23,995,000	23,995,000	47,990,000	47,990,000	47,990,000	47,990,000	47,990,000	47,990,000	143,970,000
				6층~9층	4	214,068,376	275,231,624		489,300,000	24,465,000	24,465,000	48,930,000	48,930,000	48,930,000	48,930,000	48,930,000	48,930,000	146,790,000
				10층~11층	2	214,068,376	284,631,624		498,700,000	24,935,000	24,935,000	49,870,000	49,870,000	49,870,000	49,870,000	49,870,000	49,870,000	149,610,000

102.9864A	102A	3	101동 3호	18층	1	270,158,280	355,765,200	35,576,520	661,500,000	33,075,000	33,075,000	66,150,000	66,150,000	66,150,000	66,150,000	66,150,000	66,150,000	198,450,000
			104동 1호, 2호	8층	2	270,158,280	356,492,473	35,649,247	662,300,000	33,115,000	33,115,000	66,230,000	66,230,000	66,230,000	66,230,000	66,230,000	66,230,000	198,690,000
102.1540B	102B	4	103동 1호, 2호	6층	2	267,974,693	353,750,279	35,375,028	657,100,000	32,855,000	32,855,000	65,710,000	65,710,000	65,710,000	65,710,000	65,710,000	65,710,000	197,130,000
			103동 3호, 4호	5층	2	267,974,693	353,750,279	35,375,028	657,100,000	32,855,000	32,855,000	65,710,000	65,710,000	65,710,000	65,710,000	65,710,000	65,710,000	197,130,000

주택 공급 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 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 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형별면적(㎡) x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상기 중도금 일정은 사업주체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주택형 표시안내

공고상(청약시)주택형	59.9900	59.6915	65.7440	74.9805	74.9745	81.6105	81.6045	102.9864	102.1540
약식표기	59A	59B	65	74A	74B	81A	81B	102A	102B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 및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공통 유의 사항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습니다.)
- 모집공고상의 면적은 제곱미터(㎡) 소수점 4자리까지 표현(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되며 전체 총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대로 0.0001 ㎡ 단위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 함. 이에 따라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조망별 등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은 미포함 되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통합발코니계약 비용은 미포함 되어 있으며, 별도의 통합발코니 계약을 진행되며 통합발코니계약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통합발코니계약의 상세설명은 “Ⅷ. 추가선택품목 계약 (통합발코니계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형	통합발코니계약금액	계약금(5%) (계약시)	1차중도금(5%) (2020. 11. 30.)	2차중도금(10%) (2021. 3. 2.)	3차중도금(10%) (2021. 8. 30.)	잔금(70%) (입주지정일)	비 고
59A, 59B, 65	86,570,000	4,328,500	4,328,500	8,657,000	8,657,000	60,599,000	단위 : 원(부가세포함)
74A, 74B, 81A, 81B	108,570,000	5,428,500	5,428,500	10,857,000	10,857,000	75,999,000	단위 : 원(부가세포함)
102A, 102B	141,130,000	7,056,500	7,056,500	14,113,000	14,113,000	98,791,000	단위 : 원(부가세포함)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 등)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 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주택형별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과 차이 (면적증감)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은 기타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적 배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 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 견본주택은 65, 81A 타입이 건립되어 있으며, 미건립 타입(59B, 74A, 74B, 81B, 102A, 102B)은 견본주택 내 모형 및 사업승인 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발코니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합니다)
- 계약금(분양가의 10% 중 5%원)은 견본주택 방문 계약 체결 전 납부하셔야 하며 납부계좌는 하단, 계약체결의 납부계좌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 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습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되, 잔금의 구체적인 납부시기는 공급계약서에 따라 정합니다.
 가. 법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동별 사용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나. 법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동별 사용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가 정한 입주예정일까지 입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 납입 약정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본 주택의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대출 금융기관으로 대출신청(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은 계약 체결 후 계약자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 대출규제 대상자,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차원의 아파트 중도금대출(집단대출) 심사강화로 인한 대출은행 미선정 등의 사유로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연체료 부과 또는 계약조건에 의거하여 계약해제 될 수 있습니다.
- 대출에 따른 주택신용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에 관한 추가비용은 대출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체는 사업주체의 알선 조건에 충족하는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
-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수분양자는 계약 체결 후 지정된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율 및 연체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선납금액은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및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 하여야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서류는 서류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시에는 계약 해제가 될 수 있으며,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본 불가)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59A	59B	65	74A	74B	81A	81B	102A	102B	합계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1	1	2	1	-	1	1	-	-	7
	장기복무군인		-	-	2	-	-	-	-	-	-	2
	장애인	경기도	1	1	1	-	-	1	-	-	-	4
		인천광역시	-	-	1	-	-	-	-	-	-	1
	중소기업근로자		1	-	1	-	-	-	-	-	-	2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경기도 거주자(50%)		2	1	4	-	-	1	1	-	-	9
	서울, 인천, 거주자(50%)		1	1	3	-	-	1	-	-	-	6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우선공급(75%)	4	2	11	2	1	3	2	-	-	25
		일반공급(25%)	2	1	4	-	-	1	-	-	-	8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	2	-	-	1	-	-	-	4
합계			13	7	31	3	1	9	4	-	-	68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 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 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 ~ 14:00)

■ 특별공급 공통사항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td><td>•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td></tr>
<tr><td>무주택
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td></tr>
<tr><td>청약자격
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 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tr><th>구 분</th><th>부천시 및 경기도</th><th>서울특별시</th><th>인천광역시</th></tr>
<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200만원</td><td>300만원</td><td>25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300만원</td><td>600만원</td><td>4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400만원</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r>
<tr><td>모든 면적</td><td>500만원</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r>
</table></td></tr>
</table>

■ 특별공급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table>
<tr><th>구분</th><th>신청자격</th><th>당첨자 선정방법</th></tr>
<tr><td>기관추천
특별공급</td><td>-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 특별공급 해당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합니다.)
※ 장애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거주자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는 유주택자로 구분
- 자격요건 : 신청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단, 국가유공자, 국가 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① 장애인 :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② 장기복무제대군인 및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③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 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td><td>- 공급 세대수(전용 85 ㎡ 이하 주택형별 건설량의 10% 범위 내): 16세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가능 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td></tr>
</table>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 - 청약자격요건 : 신청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자녀 3명이상이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임을 입증해야합니다. ※ 자녀수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됩니다.) ※ 이혼자녀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 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영지침 」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소형 · 저가주택 소유자는 유주택자로 구분	- **공급 세대수(전체 주택형별 건설량의 10% 범위 내): 15세대**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269호] (2018.05.08.)에 의거 다자녀 특별공급은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 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50%는 기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기도 포함)에게 공급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배정하되, 경기도의 경우 부천시 1년이상 거주 신청자가 기타 경기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경기도 거주자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신청미달이 발생하는 잔여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합니다) - 경기도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은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경기도 거주 신청자 우선공급 요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합니다.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은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청약자격요건 : 신청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는 유주택자로 구분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등 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 (출산 관련 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 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기타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영지침」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공급 세대수(85 ㎡ 이하 주택형별 건설량의 20% 범위 내): 33세대**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혼인기간 및 자녀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이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 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 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는 유주택자로 구분 ※ 무주택기간 산정 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청약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공급 세대수(전체 주택형별 건설량의 3% 범위 내): 4세대** - 동일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 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 지역인 부천시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②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가점제 점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2호 나목의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로 산정 * 청약 가점 산정기준표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 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다자녀 특별공급 운영지침」 [별표1]

배 점 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를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 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 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무주택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무주택기간 1년 이상 ~ 5년 미만	10	
당해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10년 미만	10	
		1년 이상 ~5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 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554,983원	6,226,342원	6,938,354원	7,594,083원	8,249,812원	8,905,541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665,980원	7,471,610원	8,326,025원	9,112,900원	9,899,774원	10,686,64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5,554,984원 ~ 6,665,980원	6,226,343원 ~ 7,471,610원	6,938,355원 ~ 8,326,025원	7,594,084원 ~ 9,112,900원	8,249,813원 ~ 9,899,774원	8,905,542원 ~ 10,686,649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30%이하	6,665,981원 ~ 7,221,478원	7,471,611원 ~ 8,094,245원	8,326,026원 ~ 9,019,860원	9,112,901원 ~9,872,308원	9,899,775원 ~ 10,724,756원	10,686,650원 ~ 11,577,203원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 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합니다.(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에 관한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당첨 동호수 결정	- 동·호수 추첨은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에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기관추천 특별공급 - 예비대상자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 입주자(예비입주자 포함)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등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7일) 내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예비 입주자 신청	-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주택형별 해당 세대수의 3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부적격세대 및 미계약세대, 계약해제 또는 해지된 세대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관계법령에 의거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2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선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종류별로 입주자를 선정 ② ①번에서 입주자 선정 후 남은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③ ②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세대수의 300%이내 예비입주자를 선정 ④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②번 선정 후에도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로 전환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 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유의사항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가능 (단, 2018.12.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혼기간 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부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12.11)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특례에 따라 신혼 기간 내 주택 소유 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경과 시 2순위 해당) - 특별공급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및 만 65세 이상 신청자에 한해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만 방문접수(견본주택) 가능합니다. - 인터넷청약의 경우 서류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견본주택 방문 접수 시에는 특별공급 유형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특별공급 당첨자 구비서류 참조) - 방문접수(견본주택) 접수 시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 공급에도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 처리합니다.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 하므로, 예비대상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 된 신청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 주택, 미계약 및 계약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공급신청자의 연락처(주소 및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 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간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5항 의거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천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외국에 거주한 기간 제외)한 신청자가 부천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지역 거주자 보다 우선합니다.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청약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본 주택은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재당첨제한(규칙 제3조제2항 각호 (3호, 5호, 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 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서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기 분양주택의 당첨여부에 따라 본 주택의 청약이 제한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하며,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천시의 경우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해당지역 1순위 자격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지역 1순위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적격에 해당하며 기타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합니다.(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수도권 지역 거주자가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 거주자로 인정됩니다.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가능] ※ 청약통장 관련 준수사항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가능합니다. ②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 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면적 청약 가능합니다) ※ 공통 - 층별, 동별, 호별 등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3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 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접수 불가) ※ 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①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 ②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③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신청한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 점수와 비교하여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됩니다.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별표2]

구 분	부천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비 고
전용면적 85㎡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02.27.)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전용면적 102㎡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6.12.30.)으로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에 따라 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가입기간 및 예치금(잔액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함(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순위산정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 예치금 잔액은 청약자가 청약 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거주구분	순위	신청자격
민영주택	부천시(부천시 1년 이상 계속 거주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	1순위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됩니다.(가점제 75%, 추첨제 25%)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85 ㎡ 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된 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 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 이하: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가점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 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전용면적 85 ㎡ 이상: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가점제로 나머지 7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가점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30%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70%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 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거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1순위 청약 제한 대상자	• 1순위자로서 다음 중에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① 세대주가 아닌 자 ②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전 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③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④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미만, 면적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을 충족 못한 자
		2순위	•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지역(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추첨제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2순위 청약 제한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 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불가

■ 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3조, [별표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 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20.0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은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거나 별표1 제1호 가목2)에 따라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 및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를 포함한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이상 ~ 9년미만	18	- 무주택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 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분리세대 또는 단독세대의 경우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 신고일 을 확인
		1년 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20	
		1년이상 ~ 2년미만	4	10년이상 ~ 11년미만	22	
		2년이상 ~ 3년미만	6	11년이상 ~ 12년미만	24	
		3년이상 ~ 4년미만	8	12년이상 ~ 13년미만	26	
		4년이상 ~ 5년미만	10	13년이상 ~ 14년미만	28	
		5년이상 ~ 6년미만	12	14년이상 ~ 15년미만	30	
		6년이상 ~ 7년미만	14	15년이상	32	
		7년이상 ~ 8년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미혼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이상~만30세미만: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출입국사실증명원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이상 ~ 9년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 자동계산)
		6개월 이상 ~ 1년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11	
		1년이상 ~ 2년미만	3	10년이상 ~ 11년미만	12	
		2년이상 ~ 3년미만	4	11년이상 ~ 12년미만	13	
		3년이상 ~ 4년미만	5	12년이상 ~ 13년미만	14	
		4년이상 ~ 5년미만	6	13년이상 ~ 14년미만	15	
		5년이상 ~ 6년미만	7	14년이상 ~ 15년미만	16	
		6년이상 ~ 7년미만	8	15년이상	17	
		7년이상 ~ 8년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노부모 특별공급 제외)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9.25.)**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3천만원(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 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함.

- (현재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 (현재 : 무주택자)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9.25.)**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9.25.) 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9.25.)**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단, 2007.8.31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시에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소형 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세대는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Ⅳ.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 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020.10.07.(수)** (청약Home : 08:00~17:30)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고령자 및 장애인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 신청자 본인만 견본주택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함) **※특별공급 청약신청 PC 또는 스마트폰 가능**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사업주체 견본주택(032-349-3400)
일반 공급	일반 1순위(당해)	**2020.10.08.(목)**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한국감정원'청약Home'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일반 1순위(기타지역)	**2020.10.12.(월)** 08:00~17:30		
	일반 2순위	**2020.10.13.(화)** 08: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 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문의:032-349-3400)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합니다.(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 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 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사업주체 안내 :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 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 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전용면적 85㎡ 이상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가점제로, 나머지 7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수도권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 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수(견본주택)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 앞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으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 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 적격 처리 합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 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 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 됩니다.)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 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예비입주자가 된 경우 특별공급을 우선하여 배정(둘 중 선택 불가)하고 특별공급으로 배정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는 무효 처리하며, 특별공급 예비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추첨 기회가 소진된 경우 일반 예비 지위를 인정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공급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Ⅴ. 당첨자 발표 일정

■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table>
<tr><th>구분</th><th>신청대상자</th><th>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th><th>당첨자 서류제출</th><th>당첨자 계약체결</th></tr>
<tr><td>특별공급</td><td>일반(기관추천),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td><td rowspan="3">•일시 : 2020.10.19.(월)
- 확인방법
- 한국감정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개별조회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td><td rowspan="3">• 일시 : 2020.10.19.(월)~ 2020.10.25.(일)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 248-4)
- 특별공급 당첨자: 특별공급 서류 및 계약체결 서류 지참
- 일반공급: 계약체결 서류 지참

※ 당첨자 서류 검수일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원활한 계약체결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검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검수일정 및 운영시간은 상이할 수 있음
★ 당첨자와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일정 나누거나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추후 통보로 표기</td><td rowspan="3">• 일시 : 2020.10.30.(금) ~ 2020.11.03.(화),
5일간(10:00~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 248-4)

※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 rowspan="2">일반공급</td><td>일반 1순위</td></tr>
<tr><td>일반 2순위</td></tr>
</table>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 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한국감정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구분		한국감정원 청약home(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0 10. 19. (월).~ 2020. 10. 28. (수) (10일간)
인터넷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0.10.19. (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특별공급 당첨자 구비서류 (인터넷 청약시는 당첨자에 한하여 서류 제출 기간 내 접수 완료하여야 함. 정보취약계층은 견본주택 내 특별공급 청약 접수 시 제출완료 하여야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기관추천)	O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접수 장소에 비치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O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O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 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	복무 확인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및 장기복무 군인」
다자녀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O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신혼부부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특별공급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O		소득증빙서류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표1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O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O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비사업자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O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O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O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O		주민등록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O		인장	대리인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9.25.)**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인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직인날인)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해당직장 -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원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에 비치)	- 접수장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이라도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휴직을 했던 분은 휴직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는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하며,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예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제출한 서류에 대해 위변조 검증을 실시하며, 제출 서류의 위변조 확인 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 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VI.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서류

■ 자격확인 공통 제출서류(당첨자에 한하여 서류 제출기간 내 제출되어야 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O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약서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O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본인	용도: 주택공급신청용
	O		인감도장	본인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로 공급 신청 시는 제출 생략
	O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 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 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의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경우
	O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O	출입국사실증명서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복무확인서 및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 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일반 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아니 한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만 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피부양자 직계비속	만 18세 이상의 미혼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전 부 공개 "상세"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 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 경우에 한하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 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 30세 미만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상세"로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소명자료)		O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주택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 제출 ※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 증명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주택소유에 관 한 증명 서류
		O	당첨사실 소명서류	본인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 대리인 제출 시 추가	O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청약자	본인발급용(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O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O		신분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 관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전산관리 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될 수 없습니다.

 1.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1년

 2. 수도권 외 6개월 3.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기준)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Ⅶ. 계약체결

■ 계약기간 및 장소

구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체결	**2020.10.30.(금) ~ 2020.11.03.(화) 5**일간(10:00~16:00)	부천 소사 현진에버빌 견본주택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 248-4)**

※ 상기 일정을 참조하여 반드시 해당 일 및 해당시간에 견본주택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자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공급계약서 미발행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적격자가 아님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은 취소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역사회 또는 집단감염확산을 방지하고자 건립된 견본주택 내 마스크 착용하여야 하며, 해외 입국자 또는 확진자로 인한 자가격리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별도 분양사무실에 통보 및 협의하여야 하며, 일정 등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별도 연락이 없거나 현장 내 발열로 인한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제출하여 부적격당첨 소명기간(7일)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 유지 됨.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계약 체결 이후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 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①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
 ③ 가점 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 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서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청약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분양일정(당첨자 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을 취소하고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하며,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고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 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 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 관련 예금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 관련 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 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은 사업주체가 반환해주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하며, 향후 타 아파트 청약 신청 시 1순위 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기반시설 및 혐오시설과 공동주택(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해당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이전 등기일(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전매가 금지되며, 분양권 전매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 및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승인된 사업계획 변경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관청에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공급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계약시 구비사항

- 당첨자 서류 제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한 당첨자 분께서는 계약기간 내 아래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부적격 당첨자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시는 분은 구비서류와 같이 소명자료 제출)
-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 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구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분	구비사항
본인	* 계약금 입금증(분양금 및 통합발코니 계약의 계약금) * 계약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자의 경우 제3자 대리계약 진행 불가
제 3자 대리 계약 시 추가서류(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계약 신청자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당첨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견본주택 비치) - 대리인 신분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 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부산은행	101-2071-2353-00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입금하여야 유효하며, 동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하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동·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착오납부 및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지정된 납부일에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 시 동(3자리), 호수(4자리)와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시 : 101동 301호를 계약한 홍길동 → 1010301홍길동 / 108동 1301호를 계약한 홍길동 → 1081301홍길동)

※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

■ 입주예정일 : 2022년 12월 예정(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지정일자는 추후 통보 예정)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시공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아시아신탁 주식회사가 신탁계약에 따라 시공사를 대신하여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할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자동 연장되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아니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되어 입주예정자가 직접 납부하여야함.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중도금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출금융기관 등 결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은 **이자후불제**이며, 총 분양대금의 5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 사항이 아님,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 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 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의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중도금 대출기관은 사업주체가 선정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개인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 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 취급 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 (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관련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 "적격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향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시 중도금 이자후불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사업주체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 할 수 없습니다. 분양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 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총 분양대금의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대출은 이자 후불제이며, 대출약정 기간은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 개시월 까지로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월의 이자 납입일 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 등이 대납하되(단, 사업 주체가 지정 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 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자는 입주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사업주체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 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입주지정 개시월 이자납입일 이후 발생한 중도금 대출 이자 는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 약정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 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은행과의 중도금 대출 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 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은행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 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 조건 등은 대출은 행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율 및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시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 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 취급 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에 따라 적용됨.

Ⅷ. 추가선택품목 계약 (통합발코니계약)

※ 추가선택품목은 입주자의 선택사항으로 추가선택품목의 금액 및 물품 등 관련 세부사항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임의 결정한 금액이며, 분양승인 대상(분양가상한제 비대상)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발코니계약 비용(단위 : 원 / VAT 포함)

주택형	통합발코니계약금액	계약금(5%) (계약시)	1차중도금(5%) (2020. 11. 30.)	2차중도금(10%) (2021. 3. 2.)	3차중도금(10%) (2021. 8. 30.)	잔금(70%) (입주지정일)	비 고
59A, 59B, 65	86,570,000	4,328,500	4,328,500	8,657,000	8,657,000	60,599,000	
74A, 74B, 81A, 81B	108,570,000	5,428,500	5,428,500	10,857,000	10,857,000	75,999,000	
102A, 102B	141,130,000	7,056,500	7,056,500	14,113,000	14,113,000	98,791,000	

■ 통합발코니계약 제공품목

품목	위치	적용주택형	비고	품목	위치	적용주택형	비고
발코니확장	침실, 거실, 주방, 드레스룸	전평형	일부세대 드레스룸 제외	도어	발코니(보조주방)	59A, 59B, 65	
신발장	현관	전평형		우물천정	거실	전평형	
붙박이장	침실(작은방)	전평형		아트월	거실	전평형	
시스템창호	침실, 거실, 주방, 발코니, 드레스룸	전평형(59A,59B,65 드레스룸 제외)	외부발코니 제외	월패드	거실	전평형	
냉장고장	주방	전평형		시스템가구	드레스룸	74A, 74B, 81A, 81B, 102A, 102B	
김치냉장고장	주방	74A, 74B, 81A, 81B, 102A, 102B		전동식 빨래건조대	발코니	전평형	
측면오픈장	주방	59A, 59B, 65		욕실장	욕실	전평형	
주방 상하부장	주방	전평형	확장부분 상하부장	실크벽지	침실, 거실, 주방, 드레스룸	전평형	일부 면적 제외
장식장	주방	74A, 74B, 81A, 81B		강마루	침실, 거실, 주방, 드레스룸	전평형	일부세대 드레스룸 제외
주방TV	주방	전평형					

※ 타입별 확장 선택유형에 따라 평면이 상이하며, 통합발코니계약 비용에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주택형에 따라 제공 품목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통합발코니계약 유의사항

•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으로 사업주체 혹은 시공사는 수분양자와 별도계약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통합발코니 시공은 일괄 공사를 전제하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시 통합발코니 선택여부를 결정하여 통합발코니계약을 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및 시공상 문제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견본주택은 통합발코니 선택형으로 전시하며, 비선택 세대는 선택형과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 통합발코니계약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통합발코니 시공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통합발코니 시공 시 관련법상 내실발코니가 대피공간으로 설치될 수 있고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입주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통합발코니 선택형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통합발코니계약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통합발코니계약의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통합발코니계약에 따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통합발코니계약 시공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선홈통 BOX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통합발코니계약 선택 시 비선택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통합발코니계약 비선택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통합발코니계약 비선택 세대의 발코니 확장 공사를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의 민원 발생 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 확장시에는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통합발코니계약 비선택 세대 중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통합발코니계약 비선택 세대 중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합발코니계약 비선택 세대 중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통합발코니계약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통합발코니계약 비선택 시 외부발코니 창호는 미설치되며, 내부발코니 창호만 이중창으로 설치되고,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발코니 비확장 평면으로 시공됩니다.따라서 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통합발코니계약 선택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선택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선택 세대는 선택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수납장의 길이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부세대가 통합발코니계약 비선택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정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가 설치된 공간의 출입문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발코니 확장 창호는 성능 및 안전 개선 등으로 창호의 형태, 형식,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부분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초과 발코니 면적은 「공동주택의 발코니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2006.1.23.」에 의거하여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입 하였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방화문이 설치되는 공간은 단열성능으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준공(입주) 이후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구조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타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 행위신고(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불법 구조변경으로서 엄정한 처벌과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65, 81A, 81B, 102A, 102B 주택형은 통합발코니계약 선택시에도 오픈발코니는 확장되지 않는 공간으로 시공되오니, 관련도서를 충분이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65, 81A, 81B 주택형에 제공되는 오픈발코니는 세대 전용면적에 산입되니 계약 전 이에 대해 관련도서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통합발코니 계약 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통합발코니 계약 관련 납부계좌 및 납부 안내

•통합발코니 계약일정은 분양공급계약과 동일하되,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통합발코니 비용은 계약체결 전에 아래 계좌로 공급 계약금액(통합발코니계약금액의 5%)을 입금하여야 하며, 중도금부터 잔금까지도 동일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는 반드시 아래에 명시된 통합발코니계약 납부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세대별 통합발코니계약비용은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지정된 통합발코니계약비용(중도금, 잔금)은 납부지정일자에 입금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돈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통합발코니계약비용은 아래 납부계좌로 반드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견본주택 현금수납 불가) 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 계약할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 101동101호 홍길동 →1010101홍길동)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통합발코니계약비용을 납부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확인서 등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아파트(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추가 선택품목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납부금액 및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통합발코니계약비용의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시 관할관청으로에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을 별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통합발코니계약비용은 주택형별로 산출된 가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통합발코니계약 비용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통합발코니계약 비용 납부계좌	부산은행	101-2071-2355-02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통합발코니계약 선택형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 시기는 계약 체결 시 별도 통지할 예정입니다.
- 납부금액은 상기 납부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대금 납부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납부를 지체한 때에는 그 지체한 일수에 대하여, 아파트 분양계약 상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지체 시 적용되는 연체료율을 미납 금액에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납부액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할 경우 연체료, 중도금, 잔금 순으로 충당합니다. 이 경우 잔금에 대한 연체료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IX. 추가선택품목 계약 (별도 유상옵션 품목)

※ 추가선택품목은 입주자의 선택사항으로 추가선택품목의 금액 및 물품 등 관련 세부사항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임의 결정한 금액이며, 분양승인 대상(분양가상한제 비대상)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유상옵션 품목

(1) 천장형 시스템에어컨(단위: 원 / VAT포함)

구분	타입	옵션	에어컨 설치 위치	판매가	제조사
일반형	59A, 59B, 65	2대	거실+침실1(안방)	3,200,000	삼성 (현재 유니트 설치브랜드)
		3대	거실+침실1(안방)+침실2	4,500,000	
		4대	거실+침실1(안방)+침실2+침실3	5,900,000	
	74A, 74B, 81A, 81B	2대	거실+침실1(안방)	3,300,000	
		3대	거실+침실1(안방)+침실2	4,600,000	
		4대	거실+침실1(안방)+침실2+침실3	5,900,000	
	102A, 102B	2대	거실+침실1(안방)	3,400,000	
		5대	거실+침실1(안방)+가족실+침실2+침실3	7,000,000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주택형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신청 시 수량 및 냉방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대한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단열재 적용범위,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 및 구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신청세대는 기본 제공되는 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콘센트 설치공사가 미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판매가는 해당실의 냉매배관 및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신청 시 기본 설치되는 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거실 및 침실1(안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신청 시 천장형 냉매 매립배관이 설치되며,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신청 시 설치대수에 따라 설치위치(실)가 모집공고와 동일한 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설치 위치를 변경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제품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신청 시 등기구 위치 및 기타 시공여건을 고려하여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신청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별도 유상옵션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되며, 해당 세대는 건축공정상 기본 설치 품목인 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거실 및 침실1(안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실외기실 및 발코니에 시스템에어컨 냉매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공사비는 본 아파트(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냉난방기기는 견본주택용 전시품목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는 장비사양 및 위치와는 무관하오니 계약 체결시 실제 설치위치 및 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가전제품(단위 : 원 / VAT 포함)

구분	타입	품목	금액	비 고	제조사
빌트인 냉장고	전 주택형	(S711S124B)	6,700,000		정확한 모델명, 제조사 추후 공지 (견본주택 방문 후 옵션 계약시 필히 확인바랍니다.)

• 가전제품 품목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위치, 디자인, 크기가 주택형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가전제품 품목은 선택에 따른 기본 제공되는 가구의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 빌트인 가전제품의 경우 설치 전 공급을 위한 매립호스가 설치되며, 이에 대한 시공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가전제품은 보여드리기 위한 전시품목으로 제품사양 및 디자인, 브랜드 등 별도 유상옵션과는 무관합니다.

(3) 주방옵션(단위 : 원 / VAT 포함)

품목	주택형	품목	공급금액	제조사
전기오븐	전 주택형	SK매직 전기오븐 (EON-B450M)	450,000	정확한 모델명, 제조사 추후 공지 (견본주택 방문 후 옵션 계약시 필히 확인바랍니다.)
하이브리드 쿡탑	전 주택형	SK매직 (GRA-BI322H) : 가스1구 + 인덕션2구	800,000	
		SK매직 (ERA-BT030) : 가스2구 + 인덕션1구	800,000	
엔지니어드스톤	59A, 59B, 65	주방 상판	1,400,000	
		주방 상판 + 벽체	2,600,000	
	74A, 74B, 81A, 81B	주방 상판	2,000,000	
		주방 상판 + 벽체	3,800,000	
	102A, 102B	주방 상판	1,800,000	
		주방 상판 + 벽체	3,500,000	

(4) 현관 중문 옵션(단위 : 원 / VAT 포함)

품 목	주 택 형	공급금액	비고
현관중문(뉴슬림3연동 현관도어)	전 주택형	1,100,000	
현관중문(여닫이 현관도어)	전 주택형	1,300,000	
현관중문(원슬라이딩 현관도어)	74A, 74B, 81A, 81B	1,000,000	

(5) 가구옵션(단위 : 원 / VAT 포함)

품 목	품목	공급금액	비고
침실1(안방) 붙박이장 및 파우더장	59A, 59B, 65	2,600,000	

(6) 유의사항
• 공급금액에 대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금액은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별도 유상옵션의 판매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별도 유상옵션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 유상옵션은 통합발코니계약 선택 시에만 선택이 가능하며, 실내기의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 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별도 유상옵션의 경우 계약 갯수에 따라 설치금액이 차이가 발생되며, 이에 따라 납품가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별도 유상옵션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별도 유상옵션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시 별도 유상옵션 옵션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선택품목 옵션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별도 유상옵션은 별도 계약 품목으로 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계약 후 자재발주 및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 계약 및 변경이 불가하며, 공사개시 이후 해지시 위약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 별도 유상옵션은 체약 체결일로부터 14일이내 취소시 계약금은 환급되며, 이후 취소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됩니다.
• 별도 유상옵션은 통합발코니계약 선택 세대에 한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별도 유상옵션과 관련하여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별도 유상옵션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 외 별도 유상옵션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릅니다.
• 별도 유상옵션의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상대업종」에 비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공사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되지 않습니다.(별도 유상옵션 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 2항【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의하여 소득공제 제외항목이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7호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소득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 별도 유상옵션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분양사무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 유상옵션과 관련하여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별도 유상옵션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별도 유상옵션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 유상옵션은 주택형별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한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7)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별도 유상옵션 납부계좌	기업은행	080-128722-01-019	현진에버빌(주)

• 별도 유상옵션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 시기는 계약 체결 시 별도 통지할 예정입니다.
• 납부금액은 별도 유상옵션 납부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대금 납부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 101동101호 홍길동 →1010101홍길동)
•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납부를 지체한 때에는 그 지체한 일수에 대하여, 아파트 분양계약 상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지체 시 적용되는 연체료율을 미납 금액에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납부액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할 경우 연체료, 중도금, 잔금 순으로 충당합니다. 이 경우 잔금에 대한 연체료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기본선택 품목) 적용품목 및 범위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합니다.)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수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호수에 대하여 기본 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공급 품목
문	목재문(본틀 및 문선, 문짝, 목재공틀), 창호철물일체(도어록, 경첩 등), 디지털도어록	세대현관 문틀 및 문짝, 스틸 문틀 및 문짝(도장마감), 실외기 그릴창
바닥	마루, 발코니 타일(타일 붙임 몰탈 포함), 시멘트 몰탈, 걸레받이, 현관(바닥재, 바닥씰, 디딤판), 재료분리대	바닥방수, 바닥난방 배관 및 시멘트 몰탈(난방 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벽	벽지(초배 포함), 주방벽타일(타일 붙임 몰탈 포함) 또는 엔지니어드스톤	시멘트 벽돌(시멘트 몰탈 또는 석고보드 포함), 단열재, 석고보드, 발코니 벽도장(백색)
천장	천장지(초배지 포함), 등박스(우물천정 포함), 반자돌림(몰딩 포함)	경량 천정틀 및 석고보드, 커텐박스, 발코니 천정 도장
욕실	양변기, 세면기, 욕조, 수전류, 액세사리 일체, 비데(부부욕실), 천장재(천장틀 포함), 재료분리대, 뒷선반, 샤워부스, 욕실휀, 욕실바닥 및 벽타일 등	벽 및 바닥방수,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 배관(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주방가구	주방가구(상/하부장, 아일랜드장, 팬트리장 또는 식당서재장, 톨장 등) 및 기구(상판, 가스쿡탑, 후드, 전기오븐 등) 일체, 기기류(악세사리 류), 수전류, 다용도실 가구(수납장(타입에 따라 상이), 손빨래볼 등 일체	소방관련 시설, 설비배관(자동식 소화기 설치 관련), 주방 배기덕트, 정보통신 배관, 배선 및 배선기구
일반가구	현관 창고장(타입에 따라 상이), 복도장(타입에 따라 상이), 드레스룸(타입에 따라 상이)	-
조명기구	부착/매립/거치형 조명등기구	배선기구류(스위치 및 콘센트)
기타	세탁 수전, 손빨래 수전 및 발코니 수전	각 방 온도조절기

※ 상기 품목은 주택형(타입)별로 상이하며, 상기 명시되지 않은 기본 선택품목 등은 견본주택 내 기본설치 품목에 준합니다.**(통합발코니계약 시 제공되는 품목과 혼동되지 않도록 반드시 품목을 확인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별	59A	59B	65	74A	74B	81A	81B	102A	102B
금액	19,197,000	19,101,000	19,197,000	23,992,000	23,986,000	23,992,000	23,986,000	37,310,000	37,081,000

※ 상기 금액은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기본 선택품목을 제외한 분양가격은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세대는 통합발코니계약 및 별도계약 품목 시공 신청이 불가합니다.(마이너스 옵션 신청 이후 계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에도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배선 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세대내 서비스 품목은 시공되지 아니합니다.
- 주거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가격입니다.(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일)부터 60일 이내에 법 규정을 준수하여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 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시 하자이행 보증보험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 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부분 공사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공사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시공 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 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확약서를 작성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 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 이후 미계약 세대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마이너스 옵션세대로 지정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X. 유의사항

※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 본 모집공고의 제반내용 및 건립된 견본주택은 변경 승인된 사업승인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평면도 상의 치수는 중심선 기준(발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였으므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전체 택지지구의 택지준공과 연동하여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 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 입니다.
- 본 공동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입주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일정기간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공사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으며, 대지의 이전등기가 지연될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및 경계침범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 명시된 “대지비”를 기준으로 정산함에 입주자는 동의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법인·단체 포함)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단, 공급계약이나 매매는 부동산 거래신고로 갈음하고 증여, 교환 등만 해당합니다.
 - 외국인이 상속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 등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및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는 세대 내부에 한합니다.
• 견본주택 내 사용된 마감재 목록표는 견본주택 내부 및 시행사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는 세대를 제외한 그 밖의 주택형 및 타입은 모형과 기타 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 평면형태, 가구배치, 실 면적, 마감재 등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옵션(유상)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며, 타입별 기본 제공품목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본주택은 통합발코니계약 선택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기본형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타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건립 주택형(65, 81A)외 견본주택 미건립 주택형(59A, 59B, 74A, 74B, 81B, 102A, 102B)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은 견본주택 건립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에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 등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 내 확인이 곤란한 상황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주민공동시설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본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소파, 아트월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분양가 미포함)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 등)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시 제조사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본 공사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온도조절기, 바닥드레인, 선홈통, 위생기구, 욕실악세사리, 수전류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 유니트, 환기 디퓨저,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의 경우 관람을 위한 냉·난방으로 설치됩니다.
• 본 스프링클러, 환기구(급/배기용), 소방 감지기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견본주택 가 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본 공사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정,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기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예정이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되는 CCTV는 보안용 시설물로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모형, 공급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대칭형 타입의 경우, 분양 홍보물의 일부 각 실의 향,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동 · 호수, 세대 배치, 코아 형태를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死)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설비배관 구성에 따라 거실 우물천정의 크기 및 형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부 층의 확장 여부에 따라 우물천장의 깊이 및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물천장과 걸레받이는 본 공사시 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PVC 위 래핑 또는 도장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견본주택의 시공자재와는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분전반, 단자함, 조명기구, 월패드 및 배선 기구류의 수량 및 사양은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분전반은 침실 벽체에 설치됩니다. 단자함, 조명기구, 월패드 및 배선 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 및 천연자재(천연석재, 온돌마루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견본주택 및 단지 내에 적용되는 모든 자재 및 제품은 시공시기의 생산여건에 따라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난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개발 시에 한해 동질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신발장, 복도장, 주방가구, 각실 붙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현관 및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되는 공간 방화문은 본 공사시 방화성능 향상 등을 위하여 디자인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디딤석은 석재의 특성상 디딤 폭, 무늬, 색 등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시공 편의성을 위해 분절 시공됩니다.
• 타일줄눈 위치 및 각 액세서리 위치는 각 타입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시 확인 후 체결바랍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구 등의 폭, 높이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하거나 외부창호와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세대 내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의 크기에 따라 돌출 정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욕실 천장에는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가 설치되어 있는 벽, 바닥, 천장면의 마감은 설치되지 않으며 싱크대, 신발장의 하부에는 열전달로 인한 뒤틀림 · 변형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난방 배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 설치 부위의 벽, 바닥,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부착물의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가구(장롱, 붙박이장류)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마감, 단열재의 두께 등의 차이로 기타 홍보물에 표기된 치수와 상이할 수 있음)
•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배수구 등 설비위치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거실 아트월,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에는 걸레받이가 미시공 됩니다.
• 세대 내 거실 아트월 설치 및 복도 등에 벽지 외의 두께가 있는 마감재의 마감으로 인하여 안목 길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실외기실 천장에는 환기를 위한 환기장비 및 환기용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세대 내 마루자재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시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 등이 발생됩니다.
• 세대내 커튼박스 길이는 천장배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조, 샤워부스, 주방가구, 화장대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는 비확장 발코니를 제외하고 확장된 발코니에는 별도의 급·배수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욕실, 발코니 바닥은 물 흐름 구배로 인하여 턱 높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한 시공계획으로 욕실화의 높이와는 관련 없으며, 문 개폐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대피공간은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 출입문(부부, 공용)은 본 공사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되며, 문짝모서리 상, 하부는 별도의 마감이 없습니다.
• 욕실 내 바닥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 팬이 설치됩니다.
• 욕실 내 천장에는 급수 급탕분배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 세대 내 실외기실 천장에는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 및 환기용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세대 환기장비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입면)에 환기 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에어컨용 냉매 매립배관 및 콘센트는 거실(스탠딩)과 안방(벽걸이)에 기본으로 매립되어 설치됩니다.(단, 추가품목 항목인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선택시 설치되지 않음)
• 일부 세대는 공사 시공중에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물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관련 팸플릿,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승인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계약

• 본 공동주택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사업승인변경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 면적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 또는 소수점 이하의 면적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이의제기 및 공급대금 정산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 정산시 정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음)
• 본 공동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본 계약 시 동일 평면이지만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될 수 있으니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부 여건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하고 계약한 이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및 카탈로그, 분양계약서, 각종 홍보물 등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승인변

경 또는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동의합니다.

- 공동주택의 현장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주택법, 건축법, 주차장법 등)에서 정하는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발주처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물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 거리 등의 변경,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판상형 단지 배치로 향별, 동별, 층별,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진동, 통풍,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동간 거리에 있어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각 동 인접 동과의 시각적 간섭이 발생으로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세대 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등의 이미지 및 모형에 표시된 단지 내·외부 디자인은(색채, 입면, 마감재, 조경, 측벽 그래픽, 사인, 기단 부, 기타 외부사항 등)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에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공사 시 시공사의 디자인 기준에 따라서 변경 되어 시공될 예정입니다.
- 공사 중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축물 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필로티(옥외계단 및 캐노피 등),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건축물 색채디자인] 색채를 포함한 난간의 디테일 및 높이,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은 건축구조 설계기준에 따라 내진등급 I 등급, 내진등급(MMI 등급) VII등급이 적용됐습니다.
-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세대의 주진입은 필로티에 있는 주출입구를 이용하여 진입하며, 필로티와 인접세대는 사생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주진입은 각 동 배면 및 필로티의 주출입구를 이용하여 진입하며, 출입구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사생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중앙광장 및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은 일부 동에 근접하게 설치되어 있어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다른 동에서 이용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녹지, 소공원 등은 현재 상황 및 설치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공사의 공사범위가 아니며, 현재 모형, CG 등에 표현된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비상차량동선관련하여 추후 소방서협의에 따라 소방차 주정차 공간이 표기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 외부 공원으로의 출입구 설치 여부 및 위치는 추후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 건축계획 변경과 조경계획의 변경(분양 자료에 따른 변경 포함)등으로 인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건축물의 외관 등의 부분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 관련 시설물(수목, 시설물, 조경 시설 등),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조경석 쌓기 포함)의 형태, 공법,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에 따라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시설 및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최종 인허가 및 실시계획에 따라 최종 설치될 예정입니다.
- 단지 내 레벨은 건물입구 및 인접도로와의 원활한 연결을 위하여 일부구간이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의 경우 차로는 6m이며 주차장 출입구 높이는 2.6m입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단지 내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도로와 단지 내 레벨차이로 인해 단지 및 주동으로 진입하는 보행로에 단차(계단) 또는 경사로가 형성될 수 있으며,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세대에서 시선 간섭으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옥상에는 실외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101동 및 일부 근접세대의 경우 시선간섭 및 소음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가 있으며, 단지 내 지상주차가 계획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배치계획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 바랍니다.
- 단지 내 통행로의 경우 비상차량 및 이사차량, 입주자 차량 등의 운행에 따라 단지 내 도로 인접세대의 경우 소음, 매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전 배치계획을 필이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 바랍니다.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결과에 따라서 실 시공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 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도로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에는 차량 소음,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함 및 재활용품 보관창고 인접세대에는 시선 간섭,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분리수거장의 위치는 본 공사시 환기 및 냄새로 인해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함 위치는 사용성 및 지자체 조례 등의 최종 검토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법 또는 사업승인 조건을 충족하는 수량을 설치하며,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시공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거나 단지 배치 특성 및 건물 높이에 따른 문제 등으로 사다리차(크레인) 사용이 불가한 세대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설치로 소음 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접하거나 또는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 될 수 있습니다.

• 옥상 난간 턱 높이조정, 난간형태 및 재질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호계획 및 공용부 창호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입면 차별화 및 관계기관의 심의, 현장여건에 따라 옥탑, 지붕, 외벽, 동 출입구,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입면, 아파트 외벽 문양, 문주 등의 디자인 및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정한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후 변경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지하층 내 유지·보수 점검을 위한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시공 됩니다.
• 입면 몰딩 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이 제공되고 집기류는 일부만 제공됩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시설 등)과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적용시) 등) 등으로 발생되는 운영·보수·유지관리는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 역시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외곽부위에 레벨 차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난간 등은 일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어지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 입주 후 관리 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됩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옥탑 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홈 네트워크 설비는 모델하우스 사양에 따라 시스템 장비구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특화 디자인 및 고해상도 CCTV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으로 해당 시스템 구성에 따라 장비의 사양이 사업승인시 제출되었던 사양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내에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전기 배기 루버 설치로 비상발전기 운전 시에 따른 소음, 냄새,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지하주차장 외에 지상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어 시선 간섭,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PD, AD 등 사프트 벽 내부 별도마감(미장포함)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옥상 바닥마감은 물 구배를 고려하여 시공됩니다.
• 주동 저층부 외벽은 석재로 시공되며, 근린생활시설 외벽은 석재, 뿜칠로 시공됩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난간,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 커버 등 설치물의 디자인 및 사양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각 실의 천장고는 실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 경계부는 현장 여건에 따라 분양시 공지된 사항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및 공용시설 조명, 개별 상가 간판 등에 의해 일부 세대는 눈부심이 발생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옥외공간의 모든 시설은 입주민 공동의 시설로 개인의 기호에 의한 변경은 불가합니다.
•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옥외공간의 경관 및 모든 시설의 관리책임 및 비용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인허가 관청의 인허가 조건 (사업승인 조건, 건축심의 조건 등)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 도로 및 비상차량 동선 등), 조경수와 조경시설(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색채, 크기, 모양, 경계선형 등의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위치에 따라 일부세대는 냄새, 해충 등에 의한 생활환경상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에는 추가적으로 오·우수 배관을 위한 공간이 추가적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소방내진법규에 의거하여 위생/소방용 수조의 규격, 재료, 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조명시설(가로등, 가로수 등)로 발생되는 유지·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차량출입 시 입주자 및 방문자의 차량출입을 위한 차도가 별도로 구획되어 있지 않으며, 방문자의 출입 시 차량출입을 위한 대기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설계관련 유의사항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통합발코니계약 선택 시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 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이 가구 설치공간의 폭, 높이, 길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 및 도면에서 이를 확인하고 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공급간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거실의 아트월 설치 및 복도 등에 벽지 외의 두께가 있는 마감재의 마감으로 인하여 안목길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는 비확장 발코니를 제외하고 확장된 발코니에는 별도의 급·배수 설비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천정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설치 예정입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천정에 급수, 급탕분배기를 설치 예정입니다.
- 본 공사 시 욕실폰은 욕실 1개소에 설치됩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사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타입에 따라 다용도실 상부에 설비배관이 설치되어 천정 높이가 변경되거나 타 타입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설비배관 구성에 따라 거실 우물천정의 크기 및 형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사용성을 고려하여 가구 및 창호의 시공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판 시공시 발생되는 접합 이음매가 노출, 설치됩니다.
- 전동형 빨래건조대 사용시 발코니 사이즈 및 형태에 따라 일부 벽체와 간섭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실외기실 천정에는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 및 환기용 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됩니다.
- 천연자재(천연석재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일부세대의 경우 서비스면적 확보 및 발코니 확장을 고려한 평면 설계로 통행이 어려운 폭의 발코니 구간이 있습니다.
- 각 세대별 현관은 출입시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내의 배수구 등 설비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욕조 포함)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 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거실 아트월은 걸레받이 미시공됩니다.
-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 미시공 됩니다.
-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문 및 창의 위치 및 크기는 시공과정에서 이동,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옥탑지붕,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침실1(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높이)등의 디자인 및 장식물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동 세대 발코니에 장식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공동주택 외벽의 문양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됩니다. 이를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각 세대 현관 전면은 계단, 승강기,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어 채광,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인접한 침실의 경우 엘리베이터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승강기 홀 대기인에 의한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지 않는 주택형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각종 가구 및 설비 등은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는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공사 공법은 토질 및 지하수위 등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접부지의 순차 개발 계획에 따른 공사상의 소음이 발생될 수 있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서 시공사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민공동시설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진동, 세대간의 간섭 등의 불편이 발생될 수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비 위치는 변동될 수 있음

- 단지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주차장 썬큰)과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이 일부 동의 전·후·측면의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세대에 주차장 배기 및 소음, 조망 저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위치 및 개소는 사업승인 및 변경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본 공사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지상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분리 수거시설과 인접하는 세대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정적인 가스공급을 위해 공동주택부지 내에 지상식 지역정압기의 설치 및 부지 무상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부대 복리시설의 냉방 관련시설(실외기 등)이 지상층 단지 외부로 노출되어 통행 및 세대간섭,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시공과정 중 위치, 형태 및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死)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상가동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월패드 전화 수신기능은 국선전화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각 동에는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측벽에 낙뢰예방(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을 위한 측뢰 피뢰침을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선택형 타입의 경우 최초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타입으로 시공이 되며 이후에는 배선, 배관 등 관련 설비공사에 따라 선택 변경이 불가합니다.
• 본 공사시 주방가구 하부장에 난방분배기, 욕실 천정에 급수, 급탕분배기가 설치되며, 평형 및 타입에 따라 위치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마감수준은 지하층 엘리베이터홀 및 복도마감은 바닥-타일, 벽-타일 및 도장마감 기준이며, 로비층 엘리베이터 홀과 복도는 바닥-석재, 벽-석재 또는 타일 및 도장 마감 기준임(단, 로비층이 지하층일 경우 지하층 마감기준에 따른다). 또한, 기준층의 엘리베이터홀 및 복도마감은 바닥-타일, 벽-도장 마감 기준이며, 동등수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주동 계단실 내부의 바닥마감은 지정타일, 벽마감은 지정 도장으로 시공됩니다.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선택형타입의 경우 분양후 일정시점이 지나면 본공사 일정을 감안하여 선택형 중 1개 타입으로 일괄시공되며 시공되는 타입은 그 시점의 선택 현황 및 공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 계약후 주방가구, 일반가구 규격 및 배치불만, 전자제품 사용 불편 등 견본주택에 설치된 배치 평면 및 가구류에 대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등을 입주자 개인의 기호에 맞게 변경할 수 없으며 내부 시설물의 변경 필요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합니다.
• 비확장 세대는 확장세대 대비하여 일반가구 및 주방가구 제공량이 줄어듦으로 카탈로그 상 이미지를 상세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통합발코니계약 비선택 시 홈스타일 초이스(가구형태 선택, 평면선택 등)를 선택할 수 없으며, 기본형으로만 시공합니다.
• 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민의 입주지원 및 하자 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되는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 등의 변경이 계약 체결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옥외공간의 모든 시설은 입주민 공동의 시설로 개인의 기호에 의한 변경은 불가합니다.
• 본 공동주택은 최고 19층 높이의 고층건축물로 상부층에는 빌딩풍, 해풍, 역풍 등의 영향으로 일반 A/C 실외기(정속형)를 사용할 경우, 냉방성능저하 및 작동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분전반은 침실 벽체에 설치됨. 단자함, 조명기구,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월패드 전화 수신기능은 국선전화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스마트홈 서비스 관련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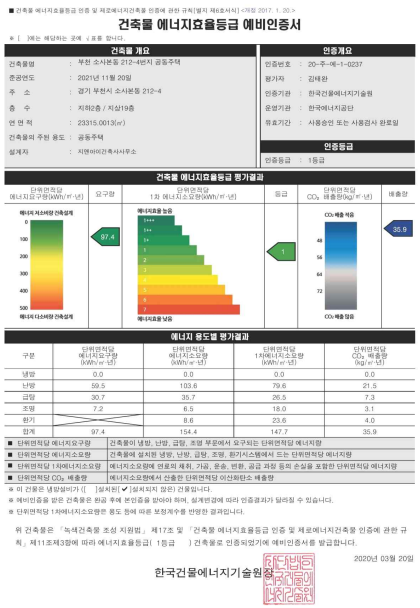
• 입주자대표회의 설립 후 별도의 인터넷회선(단독IP)을 설치하여, 홈네트워크와 연동하여 일괄소등 및 가스차단 등 원격제어가 가능합니다.(해당 홈네트워크사의 스마트 전용 어플 및 세대인증필요, 휴대폰 제어 시는 통신요금이 발생합니다.)
• 모델하우스의 스마트홈 기능 홍보 및 구연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을, 실제 입주 시 미구현 또는 성능개선 등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제3항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제품 적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 펌프 등 고효율 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하는 제품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 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 설치 수전류는 절수형 설비 적용
	실별 온도 조절장치(사목)	적용	각 실별 온도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고효율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고효율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고효율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 자동 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세대 내 대기전력 자동 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공용화장실 내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공동주택 성능등급의 표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개요	
건축물명	: 부천시 소사본동 212-4번지 공동주택	인증번호	: 20-주-예-1-0237
준공연도	: 2021년 11월 20일	평가자	: 김태완
주 소	: 경기 부천시 소사본동 212-4	인증기관	: 한국건설에너지기술원
층 수	: 지하2층 / 지상19층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연 면 적	: 23315.0013(㎡)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인증등급	
설계자	: 지앤이이건축사사무소	인증등급	: 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kWh/㎡·년)	요구량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년)	등급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kg/㎡·년)	배출량
97.4	97.4	1	1	36.9	36.9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59.5	103.6	79.6	21.5
급탕	30.7	35.7	26.5	7.3
조명	7.2	6.5	18.0	3.1
환기		8.6	23.6	4.0
합계	97.4	154.4	147.7	3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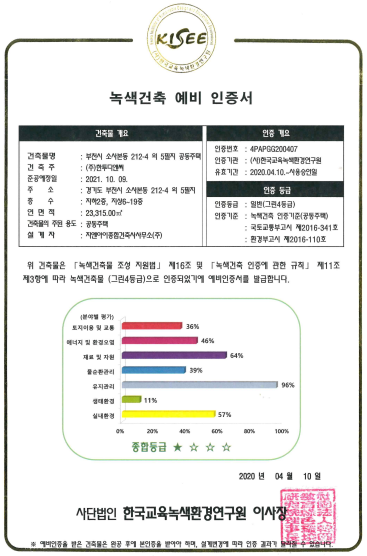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 에너지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분야가 ()설치된 ()설치되지 않은 건물입니다.
※ 에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0년 03월 20일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장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부천시 소사본동 212-4 외 5필지 공동주택	인증번호	: 4PAPG0200407
건 축 주	: (주)한우건설㈜	인증기관	: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준공예정일	: 2021. 10. 09.	유효기간	: 2020.04.10.~사용승인일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212-4 외 5필지	인증 등급	
층 수	: 지하2층, 지상5~19층	인증등급	: 일반(그린4등급)
연 면 적	: 23,315.00㎡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공동주택)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41호
설 계 자	: 지앤이이종합건축사사무소(주)		: 환경부고시 제2016-110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물 (그린4등급)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종합등급 ★ ☆ ☆ ☆

2020 년 04 월 10 일

사단법인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이사장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XI. 기타사항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세포함)

구 분		회사명	감리금액	비고
부천 소사 현진에버빌	건축, 토목, 기계	마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주)	₩664,017,277	
	소방,통신, 전기	㈜건일	₩171,6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제01282020-101-0010000 호	49.638.050.000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 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 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아시아신탁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수분양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 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 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 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홈오,,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 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관리형토지신탁 관련 특약사항 확인(관리형 토지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7조)

1. 본 사업은 시행자인 한투디앤씨(주)가 수탁자인 아시아신탁(주)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관리형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한투디앤씨(주)이고, 아시아신탁(주)는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의 수탁자로서 의무를 부담한다.
2. 분양수입금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입금 포함)로 입금되지 않은 분양대금은 납부 효력이 없다.
3. 매수인(수분양자)은 아시아신탁(주)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모든 하자보수의 책임은 시공사에게 있으며 시공사 교체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시공사(건축물 브랜드·명칭 변경 포함) 교체 시 매수인(수분양자)은 사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신탁기간의 만료, 수분양자로 개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신탁해제나 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인 한투디앤씨(주)와 수탁자인 아시아신탁(주)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매도인으로서의 아시아신탁(주)의 모든 권리·의무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한투디앤씨(주)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되며, 아시아신탁(주)(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분양계약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된다.
5.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등 PF대출금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6. 분양계약 목적물은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매도인 또는 공급자인 아시아신탁(주)는 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예외적으로 아시아신탁(주)가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아시아신탁(주)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며) 하자보수 책임은 시공사에게, 분양대금 반환책임 등 사업시행자의 책임은 위탁자 겸 수익자인 한투디앤씨(주)에게 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수탁자)	사업시행사(위탁사)	시 공 사 1	시 공 사 2
상호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한투디앤씨 주식회사	현진에버빌 주식회사	주식회사 미동이엔씨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627, 7층 (광장동, 인성빌딩)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한숲로58번길 16, 6층 603호(한숲스퀘어그린)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161(방배동)
법인등록번호	110111-3543801	110111-6817039	134511-0250312	110111-0007313
연락처	02) 2055-0000	032) 349-3400	031) 337-0525	02) 587-6015

■ 분양홈페이지 : http//www.bucheonsosa-evervill.com/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 248-4

■ 분양문의 : ☎ 032)349-3400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